

시 민

문서번호	공공디자인과-3259
결재일자	2013.3.1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공공디자인과장	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
김호곤	임경호	03/12 한문철
협 조	광고물정책팀장 김정수	

희망서울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

2013. 3.

문화관광디자인본부
(공공디자인과)

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전 문 가 : 유 ■ (옥외광고물 관련 전문가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옴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■ (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25개 자치구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■ (옥외광고 협회 등) 무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
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

심의일시 : 2013. 3. 11(월). 14:00~16:30

심의장소 : 세미나룸 A(서소문청사 1동 13층)

참석자 : 9명

한문철 본부장, 임경호 공공디자인과장, 최범 간판문화 연구소장
최영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장,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장,
정규상 협성대 교수, 김일형 김포대 교수, 최경실 이화여대 교수,
조남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

심의안건 : 2건

- 심의번호 1 :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(타사광고)
- 심의번호 2 :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(자사광고)

심의결과 : '원안 가결' 2건

- 타사광고 고시안 '원안 가결'(심의번호 1)
- 자사광고 고시안 '원안 가결'(심의번호 2)

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

심의일자	2013. 3. 11(월). 14:00~16:30		
심의대상	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		
심의안건	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심의 (타사광고)		
심의번호	1	심의결과	원안 가결
<p>【의결 내용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신규 설치 시 수평거리 각 200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타당성이 있고, 주변으로부터의 생활환경 침해 민원발생, 각종 법규·제도의 개정 등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자치구 관할 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, ○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청장이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○ 따라서 타사광고인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」 을 참석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‘원안 가결’ 함. 			

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

심의일자	2013. 3. 11(월). 14:00~16:30		
심의대상	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		
심의안건	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심의 (자사광고)		
심의번호	2	심의결과	원안 가결
<p>【의결 내용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이내, 세로는 3m 이내에서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‘건물상단 간판’의 보완적인 표시방법 규정이고, ○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미풍양속 보존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구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자사 광고물등의 수량·규격·표시방법 등을 자치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○ 따라서 자사광고인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」 을 참석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‘원안 가결’ 함. 			

- 붙임 1.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.
 2.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1부.
 3.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 1부. 끝.